

하랑기술투자 스투어드십 코드

주식회사 하랑기술투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투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랑기술투자 스투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원칙 1</p>	<p>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투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나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은 당사와 투자자간, 당사 또는 펀드와 임직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펀드와 타펀드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당사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당사를 통해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p>원칙 2</p>	<p>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당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

	<p>지 않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와 당사 또는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당사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당사가 운용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하였거나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투자대상회사와의 사이에 투자계약 외에 별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당사가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직접 또는 펀드 등을 통하여 복수의 계정으로 투자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의 회수시기나 회수방법, 조건 등을 달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p>원칙 3</p>	<p>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중장기 경영 전략(사업 확장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당사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 방안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및 위기발생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

	<p>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의 준법감시인은 투자대상 관련하여 사내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감사/실사 및 자금운용 상황 보고 및 반기별, 연간 재무상황의 주기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인 경영협의회를 통해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영, 기술, 제조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조직에 초빙 또는 파견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별 특성에 따른 경영진/핵심인력 보강, Operation 개선, 비핵심 자산 매각, 재무구조 조정 등 다각적인 가치제고 전략 수립을 통해 소위 맞춤형 가치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원칙 4</p>	<p>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스톡옵션 등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방안 또는 대주주의 지분을 유지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감대 내지 동반자 의식을 고취하고 있고, 투자 검토단계에서 투자대상회사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Reference Check를 실시하여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시 당사의 "윤리강령" 실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 내지 대주주와의 계약서상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와의 거래, 제3자에 대한 자금 대여/담보 제공 등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사항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의 계약 위반시 매수청구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도록 투자계약서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 검토시 회수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합리적/객관적인 실적전망 및 보수적인 가치평가로 Down-side Risk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별, 성장단계별 특성, 보유 지분율, 시장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투자수익률 달성 여부(미달성시 격차 최소화 방안), 투자 당시의 투자포인트 달성/지속 여부, 계약 위반 사항 발생 여부, 공동투자의 경우 타 투자자의 동의 등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 회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p>원칙 5</p>	<p>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

	<p>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 담당 심사역이 제안하고 펀드 운용팀 내부 합의 및 준법감시인에 보고, 펀드매니저 및 CEO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합목적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의결권 행사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p>원칙 6</p>	<p>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반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반기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반기 및 연간단위로 펀드 투자자 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 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원칙 7</p>	<p>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각 분야별 투자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업 전문가 및 동 투자분야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투자 산업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으로의 파견, 산업 전문가 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경영, 기술, 제조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투자대상회사의 컨설팅을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가치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본부와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전담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확보를 하고 있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표준화·전산화를 기하기 위해 사내정보시스템을 운용하여 투자업체 관련 기록(경영지표, 투자 및 회수내역, 잔고관리, 미팅록, 품의서 등), 펀드 관련 기록(펀드 개요, 투자내역, 배분내역, 운용현황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련 최근 업체정보, 업체 통합정보, Deal Flow 관리 등 경영진이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내외에서 사내정보시스템 접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 단계별 보안장치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준법감시인 부사장 이준호 (연락처: (02) 2038-8652)